

③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48	1,542,586	1,472
공무원 일·숙직비**	968	58,0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93	1,853,650	2,076

*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각주로 대상유형 표기할 것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예시)>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72,900원
 - 2024년 기준액(143만원) × (1 + 2025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3%)) / '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53p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50,000원, 숙직비 : 50,000원
- 통·리장 활동보상금 : 1인당 400,000원 이내
- 반장활동 보상금 : 1인당 50,000원